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63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정청래·강병원·강선우

김승원 · 김주영 · 송갑석

양이원영 · 오영환 · 이상헌

임오경·장경태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제2조).
-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3조).
-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 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 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 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6.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5월 8일 (어버이날)
- 9. 6월 6일 (현충일)
- 10.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1.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제4조(임시공휴일 지정의 공표) 정부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장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의 공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